
재결신청 요건으로서의 성실한 보상협의

1 질의

보상협의를 3단계 (현금보상, 채권보상, 현금보상) 로 구분한 경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(이하 “토지보상법” 이라함) 시행령」 제14조의 협의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?

2 회신

토지보상법 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협의기간 •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, 같은조 제3항에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토지보상법시행령 제14조의 “협의기간” 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의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한 기간을 협의기간으로 봅니다.

[2012.10.29. 토지정책과-5394]